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공고

공간정보 분야 창업생태계 구축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장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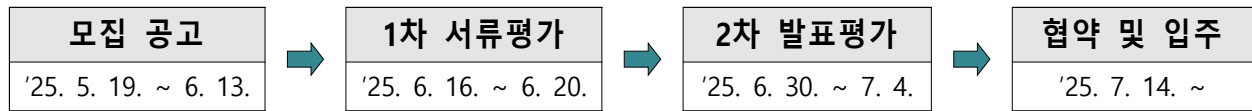
- (사업목적) 기업경쟁력 강화 및 스케일업을 위한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참여기업 / VC·AC) 호반건설 / 대성창업투자(주), 플랜에이치벤처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스타트런
- (선발규모) 총 10팀 ※ 중복지원 불가, 모집현황에 따라 분야별 선발규모 조정될 수 있음

선발분야	① 수요연계형	② 성장도약형
선발규모	5	5

- ① 수요연계형: 수요기관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부여 등 협업기회 제공
- ② 성장도약형: 혁신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투자, 판로 등 창업사업화 집중지원
- (지원기간) 최대 3년(2+1년) * 1년 단위 평가 후 지원기간 연장
- (공모자격) 공간정보 우수기술(아이디어)을 보유한 창업기업
 -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창업오피스* 무상제공, 사업화자금, 엑셀러레이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제공

* 창업오피스: 판교 글로벌비즈센터(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업무동 501, 507~510호 內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모집규모 미달 시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상생누리플랫폼, <https://www.winwinnuri.or.kr>)

* 프로그램명: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공고

○ (제출서류) * 한글파일, PDF 파일 모두 제출

- 공모전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문의처)

- (유선전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성과처 063-713-1121
- (이메일) startup@lx.or.kr

○ (기타사항) 본 프로젝트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처, 수요처 확보까지 초밀착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필수사항으로 인실별 최소 인원이 상주해야함

2

지원내용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지원(전액 무상)

구 분		4인실	6인실	8인실	10인실
호실 수(개)		3	3	3	1
입주기간		최대 3년(2+1년)			
입주부담금		전액 무상(공간임차료, 관리비 등 일체)			
필수조건	상주인원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기타	센터 內 사업자등록 필수(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형태 무관)			

②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 (자금지원) 선발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1천만원(1차년도) 지원
 - ※ 차년도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사업화자금 등 추가 지원 예정
- (기술실증) 기업 간 기술검증 멘토링, 수요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부여 및 테스트베드 제공

<2025년 오픈이노베이션 과제목록(수요연계형)>

수요기업	협업과제	선발규모
	멀티센서·AI 기반 국공유지 변화탐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 지도·비지도학습 기반 Change Detection(Former) AI 알고리즘 개발, Few-shot, Active Learning 등 데이터 한계를 극복하는 변화탐지 기술	1개사
	S-DX(Spatial/Smart DX) 디지털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고객정보 제공 실증 프로젝트 * 건설현장, 리조트, 골프장, 복합상업시설 등 현장에 맞게 기업자율제안	4개사

- (투자유치) 국토교통 혁신펀드, LX 창업지원펀드 등과 연계한 직·간접투자 및 벤처·엔젤 투자자 매칭 등 실질적 투자환경 조성
 - * **주요 투자분야:** 스마트시티(도시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도시계획 등), 디지털트윈, 위치정보 기반 설계 기술, MC/MG, 로봇틱스 기술, AI 기반 화재인식기술, 자율주행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ICT 서비스, 드론 및 항공우주기술 등
-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한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 (판로개척) 국내·외 기술 전시회, 선진기술 도입, 협업과제 발굴 등 지원
- (네트워킹) 기관, 기업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평가개요

- (평가항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 1차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선정 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10개 선발

□ 평가기준

①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기술성(40)	적합성(5)	■ 공고내용에 적합한 창업기업인지 여부 ■ 공고내용에 적합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여부
	필요성(15)	■ 공고내용에 따른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시급성
	혁신성(15)	■ 신규성 또는 기존 기술 또는 아이템과의 차별성 ■ 기술아이템의 모방 가능성 및 방지전략 여부
	구체성(5)	■ 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 ■ 기술개발 및 구현방법의 신규성
사업성(40)	사업화계획(15)	■ 목표시장의 규모 또는 성장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의 유무 (Exit 계획 포함)
	실현가능성(15)	■ 비즈니스모델, 제품구현 등 창업사업화 전략 및 방안 ■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고용효과(10)	■ 중장기 충원계획 등 신규 인력 채용 가능성 ■ 해당 업종 또는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파급효과
사업수행 역량(20)	협력계획(10)	■ 공동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방안 등의 여부 ■ 수요기업과 기술적, 업무적 협력방안
	팀원 구성(10)	■ 팀원의 적절한 역할 배분 여부 ■ 인력 보유 및 투자 역량

②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기술성(30)	타당성(15)	■ 필요성 및 시급성 ■ 난이도 및 도전성 여부 ■ 사업수행 후 파급효과
	적정성(15)	■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사업성(50)	사업화전략(15)	■ 목표시장의 적절성 ■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지원예산 대비 사업화 성과의 경제성
	글로벌 성장가능성(25)	■ 신규 시장(글로벌) 창출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 글로벌 시장규모의 적절성 ■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체계성
	기대효과(10)	■ 고용 등 국가경제 및 산업 기여 여부
사업수행 역량(20)	추진의지(10)	■ 수요기업과의 사업연계 및 협력 의지 ■ 사업추진 의지 및 사전준비 수준
	전문성(10)	■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 여부 ■ 장기적 사업플랜 수립 여부

4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로서, 모집 공고일 (2025.5.19.)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창업기업 인정기간 : 동 공고일 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7년 이하로 한정)
-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5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공모전 관련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 가능
-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자는 공모전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끝.